

대구광역시예규 제193호

(2014. 7. 30)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가.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다에서 정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총칭한다.

나. “단순노무 일반용역”이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점검용역 등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 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라. “정보통신 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 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 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 장비 및 S/W의 설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바.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가. 단순노무 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나. 학술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다. 정보통신 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라.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마.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2.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 내지 [별표 5]에 의하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8]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6.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7.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8.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1-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 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4”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근로조건 이행확인서(단순노무 일반용역에 한한다)

바. 그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 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4절 “4”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 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0절 그 밖의 사항

1. 이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3. 이 예규에 따른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별표 배점한도의 지역제한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부칙

1.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한 날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4.신 인 도		+4.5 ~△4.0	+4.5 ~△4.0
	소계		35	2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 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 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법 준수여부	5	5
I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V.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20	△20
<p>①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평점(점) = 배점한도 - 6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p> <p>(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p> <p>- 는 절대값 표시임.</p> <p>-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p> <p>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p> <p>A. 100%이상 : 7 B. 70%이상 ~ 100%미만 : 6 C. 40%이상 ~ 70%미만 : 5 D. 10%이상 ~ 40%미만 : 4</p> <p>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p> <p>A. 30%이상 : 3 B. 30%미만 ~ 20%이상 : 1</p> <p>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p>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p>				

[별표 1-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1 관련)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 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약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약약서 제출	5	0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최저 낙찰 하한율은 87.745%이상으로 적용)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약약을 말한다.

【별표 2】

학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27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4.신 인 도		+4.5 ~ △2.0	+4.5 ~ △2.0
	소계		6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A. 100%이상 : 27
- B. 70%이상 ~ 100%미만 : 25
- C. 40%이상 ~ 70%미만 : 23
- D. 10%이상 ~ 40%미만 : 21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A. 30%이상 : 3
- B. 30%미만 ~ 20%이상 : 1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

정보통신 용역(중소기업간 비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상황	2	-
	4.지역 업체 참여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신인도		+4.5 ~△2.0	+4.5 ~△2.0
	소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채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bullet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이상 : 10

B. 70%이상 ~ 100%미만 : 9

C. 40%이상 ~ 70%미만 : 8

D. 10%이상 ~ 40%미만 : 7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 ~ 20%이상 : 1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의1】

정보통신 용역(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상황	2	-
	4.지역 업체 참여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신인도		+4.5 ~△2.0	+4.5 ~△2.0
	소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채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bullet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A. 100%이상 : 10
- B. 70%이상 ~ 100%미만 : 9
- C. 40%이상 ~ 70%미만 : 8
- D. 10%이상 ~ 40%미만 : 7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A. 30%이상 : 3
- B. 30%미만 ~ 20%이상 : 1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기술 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2.0	-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5		
	C. 1인 이상의 기능사	1.0		
	D. 미 보유	0.5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7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
	5.신인도		+4.5 ~△5.0	+4.5 ~△5.0
	소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채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bullet \text{ 평점(점)} = \text{배점한도}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이상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B. 70%이상 ~ 100%미만	" : 15	" : 8
C. 40%이상 ~ 70%미만	" : 13	" : 6
D. 10%이상 ~ 40%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 ~ 20%이상	: 1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기술 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9	9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	0
나. 기술보유 상 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p>① 기술 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p> <p>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p> <p>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역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p>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7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보유상황	10	10
	4.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4.5 ~△2.0	+4.5 ~△2.0
	소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채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이상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B. 70%이상 ~ 100%미만	" : 15	" : 8
C. 40%이상 ~ 70%미만	" : 13	" : 6
D. 10%이상 ~ 40%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이상	: 3
B. 30%미만 ~ 20%이상	: 1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기 술 능 렷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장비보유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10	10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	0
<p>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p> <p>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하며,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BBB+	A3+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 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라.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차.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카.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타. 최근 1년간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Δ 2.00 Δ 1.75 Δ 1.50 Δ 1.00 Δ 0.50 Δ 0.25
파.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Δ 3.0 Δ 2.0 Δ 1.0
하.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단순노무형 일반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Δ 2.0 Δ 1.0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타”항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나(여성고용 우수기업)”, “다(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라(장애인기업)”, “마(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3) “나”항목 및 “마”항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 4) “가”, “나”, “다”, “라”, “마”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 5)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 6) “다”, “사”, “카”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7) “아”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8) “타”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9) “과”, “하”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8】

이행실적 평가방법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나.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의 규모 또는 금액을 말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경쟁성을 고려하여 해당 용역 규모(또는 금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라.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확인 등에 대하여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로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공증 또는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용역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대구광역시 (분임)경리관 귀하

접수증

1. 관리번호 :
2. 용역명 :
3. 제출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구광역시 (분임)경리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구분	청소(), 경비(), 시설관리(), 학술() 정보통신(), 폐기물(),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FAX번호	
성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결격 사유	재무위험			
계		100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규모·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분	청소(), 경비() 시설관리(), 학술() 정보통신(), 기타() 폐기물()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급 기관	기관명	(인)			전화번호			
	주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역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주(납품)기 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기술능력	5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6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7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근로조건 이행계획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4호 서식
신 인 도	9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련기관	
결격사유	10	부도 파산 등 재무위험내용	관계기관	